

과업지시서

1. 용역명 : 2026년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2. 목적 : 덩굴제거사업 감리시행으로 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실행코자함.

3. 용역대상

- o 위 치 : 고령군 우곡면 사전리, 예곡리, 쌍림면 합가리 일원
- o 면 적 : 40.0ha

4. 감리원 업무내용

- 가. 감리원은 비상주하면서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한다.
- 나.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덩굴제거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다. 감리원은 덩굴제거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와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감리원은 발주청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바.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완료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5. 감리 방법

감리원은 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기간 중 수시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6.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가. 실시설계사전검토 보고서 : 설계서 수령 후 3일 이내
- 나. 착수계검토보고서 : 착수계 검토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
- 다.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기간 중 수시
 - ※ 출장일별로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결과 작성
- 라. 예비사업완료검사결과보고서 : 사업진행 90% 시점
- 마. 감리완료보고서 : 사업완료 시점

7. 수행 기간

본 감리용역 시행 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으로 할일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나.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할일이 중단 또는 할일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8. 수행의 원칙

가. 감리수행

용역수행자는 감리 수행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훈령 제 1391호: 2019.2.14.) 및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배치

용역수행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을 시행규칙 제 31조와 관련된 별표 11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른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할일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본 할일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할일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의 사업 시행 계획서가 현지 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 조치할 사항 :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

나. 사업 착수계 검토 및 보고

- 1) 감리원은 덩굴제거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시행자의 착수계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작업계획서 :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 작업원 운영계획서 : 지침 별지 제16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 안전관리계획서 : 지침 별지 제17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 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다. 사업 시행 단계(감리중간보고 : 사업시행 중 수시)

-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감리 완료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감리 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감리원은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작업방법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5)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후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 7)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
 - 중간감리보고서 제출
- 8)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
 - 표준지의 배치
 - 표준지조사 비율은 사업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 표준지 크기는 100㎡(반지름 5.67m 원형)을 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설계표준지(50㎡)가 포함되도록 표준지 구역을 설정한다.
 - 조사인력 : 2인 1조(고급기술자 1인 + 초급기술자 1인)
 - 표준지표시 : 표준지 중앙부에 지상부 높이 1m 내외의 백색도색 막대를 꽂고 임업용 적색 마킹테이프 2겹으로 둘러서 표시.
 - 덩굴제거 감리 표준지내에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 감리표준지 위치 : GPS좌표 기록
 - 처리한 뿌리 본수(양호, 불량 구분하여 조사)

- 뿌리를 굴취한 지역(누락되거나 작업불량 뿌리 본수조사)

○ 감리표준지조사시 현장대리인이 참여하여 조사사항과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감리표준지를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9) 감리표준지배치도 작성

- 수치지형도상 표준지 위치를 표시하고 감리 완료 보고 시 첨부하여 제출

라. 사업 완료단계(예비사업완료검사)

1) 시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약기간의 9할 이전까지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직후 또는 소반별 사업완료시점)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내용

- 필지별 또는 소반별 사업실행내역(면적)

- 처리본수(처리양호 또는 처리 불량으로 구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9-966호)를 준용한다.

마. 최종감리 완료보고(사업완료 시점)

-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제30조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 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등을 포함하여 최종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의 내용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중간감리보고서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소반(표준지)별 작업확인 조서
- 작업실행 사진첩

나.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필지별 실행내역
- 감리 표준지 위치 정보가 포함된 감리준공도면 및 검사시 감리원 이동 동선이 확인되는 GPS트랙 도면(사업장확인시 이동동선 확인)

다. 감리완료보고서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 확인 조서
- 감리표준지 배치도 등
- 감리 표준지 조사야장(감리표준지 상세도 첨부)
- 준공도면
- 감리 결과 등록 확인서

라.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11. 감리원의 책임한계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